

6. 이혼

[수업을 위한 질문들]

1. 우리 사회에서 이혼(또는 재혼)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이혼(또는 재혼)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아닌가?
3. 이혼(또는 재혼)의 사유는 법률과 관습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즉 비난을 받지 않는 이혼(또는 재혼)도 있다. 이러한 법률과 관습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1. 이혼의 사유

- 이혼의 사유를 살펴본다.

- 이혼에 대한 일반 양상

-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은혜 베풀어 적고 色을 좋아하며 두루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긴다. 남녀가 婚娶함에 가볍게 합치고 쉽게 헤어져[輕合易離] 典禮를 본받지 않으니 진실로 우스운 일이다. (고려도경 권19, 民庶)
- 또 富家는 妻를 娶함에 3~4인에 이르고 조금만 서로 맞지 않아도 문득 헤어지고 버린다[離去]. (고려도경 권22, 雜俗 1)

- 이혼 사유로서 칠거지악 : 질병, 시부모 봉양, 질투

- 沆이 전에 대경 崔曄의 딸을 娶했으나 병이 있다고 하여 弃하고 좌승선 趙季珣의 딸을 改娶하였다. 왕이 牽龍 中禁 都知 巡檢 白甲 內侍 茶房에게 명하여 호위하여 보내고 御座 肩輿 燈燭을 주었다. 또 黃金 鏡奩과 粧具를 주었다. 諸王 宰樞가 모두 金帛을 선물하고 致賀하였다.(고려사 권129, 반역 3, 최충헌 附 최항)
- 양원준의 字는 用章이며 충주인이다. 서리에서 일어나 監光州務가 되었다. 妻가 시어미를 섬김에 공손히 하지 않자 그를 黜했다. 처와 아들이 울며 애걸했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고 그 처로 하여금 혼자 돌아가게 했다. 사람들 중에 혹은 그가 不仁하다고 나무랐다. (고려사 권99, 열전 12, 양원준)
- 義旼의 처 崔氏는 흉악하고 사나워 질투로 인해 家婢를 때려 죽였고 또 奴와 더불어

사통하였다[私]. 義旼이 奴를 죽이고 妻를 내쫓고[逐] 良家の 女자로 姿色이 있는 자를 많이 이끌어 혼인하고 돌이켜 다시 그들을 버렸다[弃之]. (고려사 권128, 열전 41, 반역 2, 李義旼)

- 정치적 안전과 권력

- 송유인은 (중략) 처음에 宋商 徐德彦의 처를娶하였는데, 妻는 본래 賤者였으나 재물이 巨萬이어서 白金 40근으로 宦者에게 뇌물을 주어 3품을 구했다. 의종 말에 대장군으로 옮겼는데 자못 문관들과 교통하니 무관들이 항상 그를 미워했다. 때에 정중부가 정권을 잡자 유인은 스스로 고립되어 위태로운 것을 알고 화가 자기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하여 처를 섬으로 쫓아내고[逐] 중부의 딸을 구하여 처로 삼았다. (고려사 권128, 열전 41, 정중부 附 宋有仁)
- 왕규는 평장사 李之茂의 딸을娶했는데 이지무의 아들 世延이 金甫當의 妹婿로서 亂으로 죽임을 당하자 李義方이 함께 왕규를 해치고자 하여 그 妻를 가두고 수색하였으나 仲夫의 집에 숨어 면했다. 때에 仲夫의 딸이 과부로 지냈는데 왕규를 보고 기뻐하여 通하니 왕규가 마침내 舊室을 버렸다[弃]. 義方이 죽자 왕규가 복직하고 금나라에 奉使하였다. 靜州의 중랑장 金純富가 일찍이 郎將 用純을 죽이려 했으나 用純이 도망하여 개경에 도착했다. 왕규가 돌아와 靜州에 도착하자 純富 등이 왕규가 權臣의 사위이므로 위협하여 머물러 인질로 삼아 用純을 죽이도록 청하고자 하였다. 인하여 왕규에게 일러 말하기를 “公은 衣冠之族으로 지금 舊室을 배반하고 權門에게 혼인을 맡겨 구차히 살기를 도모했으니 名義가 이미 손상되었으니 장차 무슨 얼굴로 士大夫와 함께 조정에 함께 서려고 하는가?” 하니, 왕규가 위축되고 부끄러워 대답하지 못했다. (고려사 권101, 열전 14, 王珪)

- 신분과 출세

- (손변의) 妻派가 國庶와 관련되므로 臺省, 政曹, 學士, 典誥에 임명되지 못했다. 처가 손변에게 일러 말하기를 “공께서 저의 系가 천함으로 인하여 유림의 淸要에 오르지 못하시니 감히 청하건대 저를 弃하시고 다시 世族을娶하십시오”라고 하니, 손변이 웃으며 말하기를 “자신의 벼슬길을 위해 30년의 糟糠之妻를 弃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하지 못할 일인데 하물며 아들까지 있지 않은가?” 하고 마침내 듣지 않았다. (고려사 권102, 열전 15, 孫抃)

- 가난과 출세

- 이에 都房 別抄가 鞍馬, 의복, 弓矢를 韃韃의 풍속을 본받아 다투어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서로 자랑을 삼았다. 都下의 자제들 역시 다투어 사치를 일삼으니 가난하다고 버림[弃]을 당한 처들이 많았다. (고려사 권129, 열전 42, 최충헌 附 최이)
- 때에 권귀의 자제로서 牽龍에 임명했는데, 권수평은 隊正으로 임명되었으나 집이 가난하다고 사양하였다. 친구들이 일러 말하기를 “이는 榮選이다. 그러므로 妻를 바꾸어 [易妻] 富를 구하기를 많이 행하니 그대도 만약 改娶한다면 富家에서 누가 아내를 주지 않겠는가” 하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빈부는 하늘에 달린 것인데 어찌 차마 20년 糟糠之妻를 버리고[棄] 부자 아내를 구하겠는가” 하니, 말한 자가 부끄러워 물러났다.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37년 7월)

2. 이혼 절차

- 이혼 절차에 대한 법제와 절차를 살펴본다.

- 이혼 절차에 대한 법제

- 부모의 和論이 없거나 까닭 없이 처를 버림[弃] 자는 停職하고 付處하게 하였다. (고려사 권84, 형법지 1, 戶婚, 원종 13년 정월)

- 이혼 절차

- 수비 權氏는 福州人으로 좌상시 衡의 딸이다. 처음에 密直商議 全信의 아들에게 시집갔다[嫁]. 衡은 全家를 불초하게 여겨 離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가 충숙왕 후4년에 內旨를 칭탁하여 絶婚하고 드디어 왕에게 바치니 수비로 책봉되었다. (고려사 권 89, 후비 2, 壽妃 權氏)

- 때에 판서 金世德의 처 윤씨가 수년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더러운 행실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전 홍주목사 徐義에게 시집보냈는데[嫁] 겨우 며칠 만에 윤씨가 徐義를 미워하여 내쫓았다[出之]. 憲司가 탄핵하고 군졸을 보내 그 집을 지켰다. 이인임 등이 윤씨에게 후한 뇌물을 받고 잠잠하게 하고자 꾀하며 말하기를 李豆蘭은 여러 번 邊功을 세웠다고 하여 윤씨로서 妻를 삼게 하였다. (고려사 권116, 열전 29, 李豆蘭)

- 운해의 처 권씨는 성품이 질투하고 사나웠다. 광주에 있을 때 질투하여 운해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옷을 찢었으며 良弓을 꺾어 버리고 劍을 빼어 말을 찌르고

개를 때려 죽였다. 또 운해를 쫓아가 때리고자 하였는데 운해가 달아나 면했다. 곧 그를 버렸으나 오히려 끊어지지 않았는데[去之然猶未絕] 영흥군 環에게 시집갔으므로 門下府에서 憲司에 牒하여 국문하였다. (고려사 권114, 열전 27, 崔雲海) * 최운해 1347(충목왕 3) ~ 1404(태종 4).

○ 헌납 元松壽와 郭忠秀가 찬성사 鄭天起를 탄핵하여, 告身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히 政房에 들어가 인물을 품평하였고, 正妻를 멀리하여 버리고[疏棄] 항상 倡家에 있다고 하였더니, 왕이 노하여 송수와 충수를 行省에 내려 국문하고 그 관직을 파면하였다. (고려사절요 권25, 충목왕 4년 8월)